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20

발의연월일: 2020. 7. 14.

발 의 자:김승원·김성주·김용민

김진표 • 박광온 • 박 정

안민석 · 오영훈 · 이상헌

이성만 • 이장섭 • 임호선

전용기 • 전재수 • 정정순

조정식 • 한병도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올림픽대회 등에 입상한 선수 또는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이하 "체육인"이라 함)에게 장려금이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에 대한사항 및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인의 장려금 등의 지급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 등에 대한 규정이 현행법 및 하위법규에 산재되어 있어 체육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을 제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의 사용 등에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인 복지법안」(의안번호 제19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5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49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① ~ ③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국가는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 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의2(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 ① 국가는 국가대표선수 또는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이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 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 은 경우에 그 선수 또는 지도 자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 정한다. ② 국가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 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 광부에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 1.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인정및 대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및 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 2. 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위로금, 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 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 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 사 · 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 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 관 등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 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5(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 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u>수</u>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일부개정법률 <삭 제>

- <u>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u>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u>다.</u>
- 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국민 저 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 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 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 1. ~ 5. (생 략)
 - 6. 제14조제4항에 따른 장려금및 생활 보조금의 지원
 - 7. ~ 12. (생 략)
 - ② ~ ④ (생 략)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49조의2(벌칙)
 제18조의5제3항
 <삭 제>

 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
1. ~ 5.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 0 , = = /
6.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6.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
6.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지원 사업7. ~ 12. (현행과 같음)

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